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9799 판결 [보증채무금]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명

담당변호사 한봉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2.부터 2023.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543,744,000원에 대하여 2023. 6. 9.부터 위 가.항 기재 6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연  
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조중래

별지